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마카오특별행정구 의료 인원에 대한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업무 수행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

주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10 회] 제 **16** 호

2023 년 **5** 월 **26** 일 주하이시 제 **10** 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 의료 인원에 대한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업무 수행 관리에 관한 규정" 이 표결 통과되었다. 이를 공포하며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주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 년 **5** 월 **26** 일

마카오특별행정구 의료 인원에 대한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업무 수행 관리에 관한 규정

(2023 년 **5** 월 **26** 일 주하이시 제 **10** 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통과)

제 1 조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이하 "협력구" 라 약칭) 건설을 추진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이하 "마카오" 라 약칭)의 약학기술자들이 협력구에서 편리하고 질서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리고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 요강"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건설 총제적 방안" "헝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발전 촉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협력구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은 협력구 범위 내에서 마카오 의료 인원 자격 허가 증서에 부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조 본 규정에 따라 협력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 의료 인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마카오 주민 신분이어야 한다.

(2) 마카오 유효 의료 인원 자격 허가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 마카오의 "의료 인원 전문 자격 및 영업 등록 제도"의 적용 범위에 든 의료 인원. 주로 의사, 치과의사, 중의사, 약사, 중약사, 간호사, 의무화학실험사, 방사선사, 척추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영양사, 약국 기술 조수 등이다.

(4) 마카오에서 관련 업무 활동에 종사한 지 만 **2** 년이 되어야 한다.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의료 보건 서비스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구에 초빙되어야 하며 협력구 범위 내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협력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마카오 의료 인원은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초빙 의료 기구에 대리 신청을 서면으로 위탁하며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관리 방법은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이 따로 제정한다.

제 6 조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 합격되면 등록해 주고 종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업 증서에는 개업지점, 개업종류, 개업범위, 개업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초빙 단위와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의 등록을 거치지 않은 마카오 의료 인원은 협력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 7 조 등록 유효 기간은 의료 기구에서 마카오 의료 인원을 초빙하는 기간과 같아야 하며 최장 3 년이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할 수 있다.

마카오의 의료 인원이 영업 장소, 영업 종류, 영업 범위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에 신청하여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은 협력구에서 영업할 때 내륙의 의료, 위생, 약품 관리 및 진료 간호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 위생, 약품 관리 및 진료 간호 등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한 영업 지점, 영업 종류, 영업 범위, 영업 기한에 따라 관련 의료 업무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의료기구는 규정 제도를 수립 완비하여야 하고 마카오 의료 인원 채용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마카오 의료 인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영업 증서에 기재된 영업 지점, 영업 종류, 영업 범위, 영업 기한을 초과하여 마카오의 의료 인원을 관련 영업 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협력구에서 영업 증서를 취득한 마카오의 의사, 중의사, 치과 의사는 협력구의 의료 기구에서 영업할 때 처방권을 가지며 기타 마카오의 의료 인원은 협력구에서 영업할 때 처방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10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은 규정에 따라 후속 의학 교육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은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을 계속 의학 교육 훈련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 기구는 그 기구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마카오 의료 인원이 지속적인 의학 교육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이 마카오에서 지속적인 전문 발전 활동에 참가하여 소정 학점을 취득한 경우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은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제 11 조 마카오에서 **5** 년 이상 임상 사업에 종사한 마카오 중의사는 협력구에 중의 진료소를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이 수리한 후 중의 진료소 신청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은 협력구에서 영업만 **1** 년이 되면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에 그 주요 영업 기구 이외의 협력구 의료 기구에서 상응한 영업 활동을 전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영업 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3 조 협력구의 위생 건강 주관 부문과 종합 집법 부문은 내륙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등에 따라 이미 등록된 마카오 의료 인원의 협력구 내 영업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마카오 의료 인원이 등록을 거치지 않아 협력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미 등록된 마카오 의료 인원이 영업 증서에 기재된 영업 지점, 영업 종류, 영업 범위, 영업 기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간호사 조례” “의료기구 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5 조 협력구 의료 기구가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의료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마카오 의료 인원이 협력구에서 관련 영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 비위생기술 인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료 기구 관리 조례”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6 조 마카오 의료 인원이 협력구에서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 의료 인원이 협력구에서 영업하는 기간에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 분쟁 예방과 처리 조례” “의료 사고 처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협력구 위생 건강 주관 부문은 마카오 의료 인원 업무 수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립하여야 한다.

마카오 의료 인원의 영업 정보는 협력구 정무 사이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